

한국증권학회 이사회 운영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기능)

- ①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외부 회계법인이나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에 한국증권학회(이하“학회”라 한다)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 성

제4조 (구성)

- ① 이사회는 회장, 차기회장, 부회장. 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회장은 정관 제11조의 부회장 및 이사에 포함되지 않는 당연직 부회장 및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별도의 선임 및 취임승낙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.
- ③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 중 2인 이상의 총무이사를 둘 수 있다.
- ④ 회장은 학회의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.

제5조 (의장)

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, 회장 유고 시에는 차기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운 영

제6조 (이사회 구분 및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정기총회에 제출할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.
- ④ 이사회 구성원 이외에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는 확대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1주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7조 (이사회 결의 방법 및 사항)

- ① 이사회 결의 방법 및 사항은 정관 제22조와 제23조를 따른다. 이 경우 정관 제23조제7호의 “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”이란 조직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,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, 임원 징계에 관한 사항, 학회의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.
- ② 이사는 위임장을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의장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③ 보고의안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에 의해 보고 또는 결의할 수 있다. 서면결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건을 첨부한 이사회 결의서를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

제8조 (이사회 의사록)

이사회 의사진행 및 결의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고, 출석이사 3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